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 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



[시행 2025. 2. 21.] [국토교통부령 제1454호, 2025. 2. 21., 일부개정]

국토교통부 (자동차정책과) 044-201-3838, 3839 국토교통부 (자동차운영보험과 - 자동차 등록업무) 044-201-3860, 3861 국토교통부 (자동차운영보험과 - 자동차 검사, 정비) 044-201-3858, 3859 국토교통부 (자동차운영보험과 - 자동차 매매, 경매 등) 044-201-3856, 3857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「자동차관리법」제21조제2항・제30조의6제2항・제34조의4제3항・제45조의3제4항・제47조제6항 및 제66조제6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, 대체부품인증기관, 튜닝부품인증기관, 자동차검사대행자, 지정정비사업자,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, 자동차관리사업자, 자동차제작자등,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 및 자동차성능・상태점검자에 대한 지정 또는 등록의 취소 및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와 같은 법 제46조제5항 및 제64조제2항・제3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6. 9. 7., 2018. 6. 28., 2018. 11. 14., 2023. 6. 9., 2024. 2. 16., 2024. 8. 14.>

제2조 삭제 <2000. 7. 14.>

제3조(증거에 의한 처분) ① 관할관청은 「자동차관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. <개정 2023. 6. 9., 2024. 2. 16., 2024. 8. 14.>

-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지정의 취소 또는 사업장의 폐쇄(이하 "등록등의 취소"라 한다)
 - 가.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
 - 나.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의 취소
 - 다.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의 취소
 - 라.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
 - 마.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대한 지정의 취소
 - 바. 법 제66조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장의 폐쇄
 - 1)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
 - 2)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한 등록의 취소
 - 3)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
 - 4)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성능・상태점검자에 대한 사업장의 폐쇄
-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업무의 정지(이하 "사업등의 정지"라 한다)
 - 가.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
 - 나.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의 정지
 - 다.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의 정지
 - 라.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업무의 정지
 - 마.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대한 업무의 정지
 - 바. 법 제66조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정지
 - 1)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
 - 2)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한 사업의 정지
 - 3)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
 - 4)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・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(이하 "해임명령"이라 한다)
 - 가.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해임 명령
 - 나.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자에 대한 정비책임자의 해임 명령
- 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(이하 "직무정지명령"이라 한다)
 - 가.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직무정지명령
 - 나.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자에 대한 정비책임자의 직무정지명령
- ②관할관청은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현지조사등을 하거나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4조(청문) 관할관청이 등록등의 취소, 사업등의 정지,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(이하 "행정처분"이라 한다)을 하려는 때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, 대체부품인증기관, 튜닝부품인증기관, 자동차검사대행자, 지정정비사업자,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(이하 "대행자등"이라 한다), 자동차관리사업자, 자동차제작자등,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, 자동차성능・상태점검자(이하 "사업자"라 한다) 또는 기술인력 및 정비책임자(이하 "기술종사원"이라 한다)나 그 대리인에게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대행자등, 사업자, 기술종사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 <개정 1988. 1. 16., 2010. 3. 11., 2016. 9. 7., 2018. 6. 28., 2018. 11. 14., 2023. 6. 9., 2024. 2. 16.>

제5조(처분의 기준) ①이 규칙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.

- ②동일한 대행자등 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.<개정 1988. 1. 16., 1996. 12. 28., 2016. 9. 7., 2021. 8. 27., 2024. 2. 16.>
- 1.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등록등의 취소 또는 해임명령인 때에는 등록등의 취소 또는 해임명 령을 한다.
- 2.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사업등의 정지인 때에는 사업등의 정지를 하되, 2 이상의 사업등의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.
- ③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되, 별표에서 순차적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때(순차적인 처분기준을 정하였으나 그 다음 순차의 처분기준이 없는 때를 포함한다)에는 종전의 사업등의 정지기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기간을 그 사업등의 정지기간으로 한다.<개정 2016. 9. 7.>
- ④관할관청이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등의 정지기간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.<개정 1988. 1. 16.>
- ⑤관할관청은 대행자등(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제외한다)이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일부 사업장에 한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해당 위반 사업장의 업무에 대하여 일부정지처분을 할수 있다.<신설 2000. 7. 14., 2010. 3. 11., 2024. 2. 16.>

제6조(행정처분의 감경등) ①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. <개정 1988. 1. 16., 2018. 6. 28., 2019. 12. 9., 2024. 2. 16.>

- 1. 대행자등 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 그 사업 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자동차의 등록, 검사, 정비, 대체부품 인증 또는 튜닝부품인증(법 제34조의3에 따른 자동차 튜닝용 부품의 성능 및 품질에 관한 인증을 말한다. 이하 같 다) 업무의 발전에 공이 큰 때
- 2. 그 밖에 관할관청이 위반행위의 동기·정도·결과 등을 고려해서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자동차의 등록, 검사, 정비, 대체부품인증 또는 튜닝부품인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표에 따른 기준과 달리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
- ② 삭제<1988. 1. 16.>

- ③관할관청은 대행자등 · 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법이 정한 처분기준의 범위안에 그 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.<개정 1988. 1. 16., 2024. 2. 16.>
- ④ 삭제<1996. 12. 28.>
- 제7조(처분의 집행) ① 관할관청은 대행자등 · 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 별표의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이 규칙에 따른 처분을 하되, 등록등의 취소, 사업등의 정지,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으로 해당 사업을 이용하는 자의 불편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. <개정 2024, 2, 16.>
 - ②행정처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.<개정 1988. 1. 16., 1996. 12. 28., 2000. 7. 14.>
 - 1. 등록등의 취소, 사업등의 정지명령 : 별지 제1호서식
 - 2.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 : 별지 제2호서식
 - 3. 삭제 < 2000. 7. 14.>
 - ③관할관청은 사업등의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장 출입문에 그 처분내용을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.<개정 1988. 1. 16.>
 - ④관할관청은 대행자등에 대하여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대행자등에 갈음하여 다른 대행자등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<개정 1988. 1. 16., 2000. 7. 14., 2024. 2. 16.>
 - ⑤ 삭제<2000. 7. 14.>
 - ⑥ 삭제 < 2000. 7. 14.>
- 제8조(기록 및 보존) 관할관청이 이 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때에는 대행자등 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처분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기록을 보존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1988. 1. 16., 2010. 3. 11., 2024. 2. 16.>

제9조(시행세칙)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관청이 정한다.

부칙 <제1454호,2025. 2. 21.>

이 규칙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